

# 인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03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함 (안 제3조, 제6조 및 제7조).
- 나. 법령의 근거가 없는 권리·이행명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안 제9조, 별표 1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안 별표 2, 별표 3).
- 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16조 신설).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12. 19. ~ 2004. 1. 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1회용품 사용의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정7511- 949호, '03.9.3)

##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36조2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1회용품사용억제 등) ①시장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별표3의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한다.

②시장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③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별표3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이외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권고 · 이행명령 주요사항”을 삭제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청소사업소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활용담당 박부옥
	담당자 성명·전화	백현숙 (행정 3537)

&lt;별표 2&gt;

##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4.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5. 빙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빙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법 제22조제2항)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300 300 200 300 50 300 200 150 50	300 300 300 300 100 300 250 200 7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1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100	100	100

&lt;별표 3&gt;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6조 관련)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점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제41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점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0  50  30  10	200  100  50  30	300  200  100  5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0  50  30	200  100  50	300  200  100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적용법	부과 대상	부과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증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체질로 도포 또는 침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산업의 육성) ①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활용산업의 육성) ①----- 법 제31조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①시장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지원을 집하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분리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①--- 법 제34조제4항의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업무처리절차) ①</u> 시장은 관할구역내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 실천사항을 준수할 것을 문서로 권고하여야 한다.</p> <p><u>②</u> 시장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이하 "이행명령"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당해 사업장의 1회용품 보유량 및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다.</p> <p><u>③</u>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장별로 권고 또는 이행을 명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별표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삭 제&gt;</u></p>
<p><u>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u> (생 략)</p> <p><u>②</u>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u>③</u> (생 략)</p>	<p><u>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①</u> (현행과 같음)</p> <p><u>②</u>----- ----- 30일 ----- ----- ----- ----- ----- -----  <u>③</u>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16조(1회용품사용억제 등) ①</u>시장은 법 제 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별표3의 1회용품사용억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p> <p>② 시장은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p>
<u>&lt;신 설&gt;</u>	<p>③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별표3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u>제16조 (생 략)</u>	<u>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u>
<u>제17조 (생 략)</u>	<u>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u>
<u>&lt;별표1&gt;</u> <u>권고 : 이해명령주요사항(제9조관련)</u> (표 생략)	<u>&lt;삭 제&gt;</u>